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0.
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3월 16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

다. 회부일자: 2023년 3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3. 27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유광순)

가. 제안이유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(안 제9조제2항)
-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규정 추가(안 제9조제5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임.

#### 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,
-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규정을 추가하였음.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2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3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명확히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체계화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지정(안 제9조제2항)
- 나.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규정 추가(안 제9조제5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2. 9. ~ 3. 2./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2항 중 “부구청장”을 “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재난관리,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”을 “재난관리”로 한다.

3.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구청장</u>이 되고,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그 밖에 안전 및 <u>재난관리</u>,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</p>	<p>제9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부구청장</u>, 부위원장은 <u>안전교통국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</u></p> <p>4. ----- <u>재난관리</u>----- ----- -----</p>